
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의 개정[법률 제17637호(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]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이 추가(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2조제1항제9의2호, 제43조의2제2항 등)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한국주택금융공사가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점인에 관한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[1. 가. (4) 신설]

3.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1419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의 가. (4)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4) 한국주택금융공사가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 가. (생 략) (1)~(3)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 가. (현행과 같음) (1)~(3) (현행과 같음) (4) <u>한국주택금융공사가 「한국주택 금융공사법」 제22조제1항제9호의 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 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